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청 30313	기안 (전화: 445-8705)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(·준영구.) 10.5.3.1.	구 청 장	시	
수신처 보존기간	준 영 구	결결		
시행일자	86. 9.			
보조기관	부 청 장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	협조기관	경주지방행정과장	문서 통제
기안책임자	도시정비국장		(정지영)	
경유	86.9.11	작성일자	86.9.11	86.9.11
수신처	606 양호초	작성명	부안참조	작성인

본성동구청도시정비과보편  
지하도면작성과

제 목: 도시계획시설(유원지: 락지),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구역 및 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녹지, 수도, 공공공지, 도로) 지적출연.

(제 1 안) 내부 결재

1. 도시 30310-358 (36.7.14.)호 및 도시 30310-434 (86.9.9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구 관내 광광동 151 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(유원지: 락지)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구역 및 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녹지, 수도, 공공공지, 도로)이 서울시 고시 제 479호 (36.7.14.)로 결정고시 되었기 위사항과 위 사업구역내 서울시 고시 제 342호 (30.9.9.)

원본대조필

토 면적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녹지) 및 서울시 고시 제 650호 (86. 9. 9.)로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, 녹지, 수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의 규정에 의거 고시안과 같이 지적승인코져 합니다.

( 제 2 안 ) 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시설 (유원지 : 폐지)과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구역 및 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, 녹지, 수도, 공공공지, 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시 고시 제 473호 (86. 7. 14.)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유원지 : 폐지),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구역, 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, 녹지, 수도, 공공공지, 도로)과 위 사항중 서울시 고시 제 649호 (86. 9. 9.)로 면적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녹지)및 서울시 고시 제 650호 (86. 9. 9.)로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, 녹지, 수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 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충  
니다.

1986. 9.



서울특별시

가. 지적 승언 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 (유원지) 폐지

구분	명칭	위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유원지	성동구 광장동 151 번지 일대	120.500	
변경	"	"	"	폐지

○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구역

구분	명칭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도시계획사업구역 (일단의	성동구 광장동	45.090. <sup>5</sup>	
	주택지 조성사업) 겸정	151 번지 일대		

○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, 녹지, 수도, 공공공지, 도로)


· 주차장

구분	명칭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주차장	2 B.L	568	
"	"	6 B.L	1,913. <sup>9</sup>	
"	"	7 B.L	1,592. <sup>9</sup>	

· 녹지

3342

본대조필

구분	명칭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부지	10 B.L	577.4	
"	"	12 B.L	134.2	
"	"	3 B.L	51.1	
"	"	9 B.L	1,276.2	
' 수도				

구분	명칭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수도	9 B.L	547.2	

' 공공공지

구분	명칭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공공공지	9 B.L	172.2	쓰레기적환장

' 도로

구분	등급	류범	번호	폭원 (AM)	연장 (M)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
신설	중로	2	1	18	63	광장동 152	광장동 150-8	광장동 150-6
"	"	3	1	12	584	광장동 549-6	광장동 184-6	광장동 128
								광장동 107
								광장동 168
"	소로	2	1	33.13	33.13	광장동 173-2	광장동 173-2	광장동 163



구분	동명	구분	면적	구분 (㎡)	면적(㎡)	기	종	구
						적	격	요
신설	소로	2	2	8	60.5	광장동 556-5	광장동 154	광장동 133
"	"	2	3	8	130.6	광장동 81-1	광장동 76-15	
"	"	2	4	8	75.9	광장동 31-3	광장동 38	광장동 54
"	"	2	5	8	24.3	광장동 64	광장동 543-1	
"	"	2	6	8	114	광장동 30	광장동 84	광장동 63
"	"	2	7	8	9.0	광장동 150 -6(중2-1)	광장동 148 -7(지구 개)	
"	"	3	1	4	26	광장동 101	광장동 144-4	

나. 지적승연도면'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상부)

(제 3 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발신: 시장 (구청장)

적용 받은 연

1. 우역시 (구) 관내 도시계획시설 (유원지: 폐지) 과 도시계획사업

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구역 및 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녹지,

수도·공공공지, 도로)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지적 승연하

였기 보고 합니다.

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수신처 건설부장관 (도시계획과장), 서울특별시시장 (시상 기획과장, 도시계획과)

( 제 4 안 )

# 원본대조필

수신 총무처 장관

발신 : 시 장

참조 법무담당관



제목 관보 게재 의뢰.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게재구분 : 고 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유원지: 녹지)과 도시계획사업(일

단외 주택지 조성사업)구역 및 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녹지, 수도

공공공지, 도로)지적승인

다. 관련법규 : 도시계획법 제13조

첨부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 제 5 안 )

수신 서울 특별시장

발신 : 구청장

참조 시면과장

제목 관연 날인 의뢰

1. 다음 사항을 관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총무처 관보 기재용 1 권

나. 건설부 지적 승인 보고용 1 권

첨부 고시문 사본 1 부. 곱.



( 제 6 안 )

수신 수신처 참조

발신 : 구 청 장

제목 같 은 권

1. 서울시 고시 제 478호 (86. 7. 14.)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

(유원지 : 매지), 도시계획사업 (열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구역, 사업구역내

도시계획시설 (주차장, 녹지, 수도, 공공공지, 도로)과 위사항중 서울시 고시

제 649호 (86. 9. 9.)로 변경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녹지)및 서울시 고시

제 650호 (86. 9. 9.)로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, 녹지, 수도)

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.

2. 해당 동장은 본 내용을 각시판에 게시하고 주변공보에 만전을 기함

것.

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 부. 곱.

수신처 총무과, 기획감사과, 직무과, 청소과, 주택과, 건축과, 공원과지과.

건설관리과, 토목과, 수도공사와, 불장동 (장).



원본대조필